

#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에 따른 소득세 과세 방안 연구

이은미\* · 윤태화\*\*

## ■ 목

## ■ 차

I. 서 론	153	3. 영 국
II.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	158	4. 독 일
1. 가상자산 취득		5. 호 주
2. NFT 판매		
3. 국내의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 관련 과세 현황		IV.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 관련
III.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 과세	168	국내 과세 발전 방안 논의
1. 미 국		1. 가상자산 취득 과세 방안 모색
2. 일 본		2. NFT 판매 과세 방안 모색
		V. 결 론
		181

\* 제1저자 : 세무사,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투고일 : 2023. 9. 21. 1차수정일 : 2023. 11. 8. 게재확정일 : 2023. 11. 14.

### <국문초록>

가상자산(Virtual Asset)의 거래·투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증가함에 따라, 2020년 한국 정부는 금융 시장 안정화 및 자산 보호를 목표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해외 금융 선진국과 비교하면 초기 단계로써, 가상자산의 과세 대상과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불분명하며, 가상자산의 취득과 판매 등으로 인한 소득 명목 및 그에 대한 세분화된 과세 체계 정립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자산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실질성, 합목적성에도 위배되고, 국제 과세법의 흐름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 의식 하에, 2025년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체계 중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세에 초점을 맞추어 과세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채굴(Mining), 스테이킹(Staking), 포크(Fork), 에어드랍(Airdrop)을 통한 가상자산 취득 및 NFT(Non-Fungible Token) 판매에 관련된 국내 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파악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관련 과세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과세 적용 범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가상자산의 취득 방식 중 채굴, 스테이킹, 포크, 에어드랍을 통한 소득 창출에 대해 주요 국가들은 과세 대상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내 소득세법 제1조에 따르면 응능부담 원칙이 적용되며,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이상, 개인 소득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과세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채굴, 스테이킹, 포크, 에어드랍 등으로 발생한 취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소득 성격이 유사한 규정을 차용하여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게 하던지 다른 상위법에서 정의하여 과세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가상자산 취득만으로도 이익이 발생하는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과세 규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내 가상자산의 관리와 추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것이다. 한편, NFT는 국내외에서 예술, 엔터, 스포츠 분야에 접목시켜 많은 판매량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급격한 NFT 시장 확대 및 수익 창출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과세 규정이 불명확한 관계로 소득세법에 따른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의 가상자산 및 NFT 관련 과세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성찰과 해외 주요국의 사례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실제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되, 다른 자산과의 형평의 원칙도 존중하는 과세 실질성, 형평성, 합목적성에 입각한 과세 기준

정립 및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의 경제 체제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증가할 가상자산의 합리적인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가상자산 과세에 관련된 국제법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국제적, 제도적 정합성을 지닌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가상자산, 소득세, 스테이킹, 에어드랍, 채굴, 포크, NFT

## I. 서 론

가상자산은 21세기의 IT 신기술 발전의 결과 탄생한 혁신적인 실체로써, 일반 사용자는 물론, IT 분야의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들조차 명확한 개념 파악이나 정의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상자산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결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거래소와 장외시장을 통한 투자 및 투기 목적의 거래 대상이 되는 등 일상에서의 사용례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가상자산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은 물론,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급격한 가격적 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 막대한 투자 이익이나 손실을 본 사례들이 속출함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Virtual Asset)<sup>1)</sup>은 네트워크 가상 공간을 통해 용이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무형 자산으로써, 편리하고 혁신적인 미래의 금융 거래 수단으로서의 관심과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sup>2)</sup>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1)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시행 : 2021. 3. 25.)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면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된다.

2) 김재득 · 김찬선, “디지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SWOT 분석”, 『한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약 19조 원)는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및 루나 사태로 인한 신뢰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12월 말(약 55.2조 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평균 거래 규모가 약 3.0조 원에 달하는 등 시장 규모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투자 비중이 오히려 상승하는 등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sup>

한편, 가상자산의 규모 확대는 경제 성장 및 금융 거래 혁신에 기여할 수 있지만, 낮은 투명성과 미비한 규제 등으로 인해 정확한 가상자산 거래량이나 이득 규모 파악이 어려워 불공정 거래행위 및 이용자 자산 미보호 등 각종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 경제에서의 가상 자산의 지속적인 영향력 확대 및 실물 경제와의 연계성 심화는 통화 정책 및 금융 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sup>4)</sup> 이에, 국내에서는 2020년 세법 개정안 도입을 통해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 체계 마련에 착수하였다.<sup>5)</sup> 또한, 2023년 가상 자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에 통과함에 따라, 향후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sup>6)</sup>

---

『융합과학회지』 제11권 제9호, 한국융합과학회, 2022, 121~136면 ; 신상이 · 전홍민,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과세가능성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9권 제5호, 한국세무학회, 2018, 183~209면.

- 3) 금융위원회, “22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3. 3. 20.자 보도 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78599?srchCtgr=…&srchText=&srchBeginDt=&srchEndDt=>(검색일 : 2023. 6. 12).
- 4) 황인창,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향후 주요이슈”, 『CEO Brief』 제2022-6호, 보험연구원, 2022.
- 5) 김갑래,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이슈보고서 22-23), 자본시장연구원, 2022.
- 6) 2023년 6월 30일에 이용자 자산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 감독 · 재권한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

현재 국내의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써,<sup>7)</sup>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모두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요 예규 변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가,<sup>8)</sup>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sup>9)</sup> 또한, 소득세에 대해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실행은 유예된 상태이며, 법인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법인의 순자산 이익이 증가했을 때에만 발생한다.<sup>10)</sup>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시가고시 가상자산사업자’,<sup>11)</sup>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 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선 및 보완을 위한 다양한 학술 연구가 진행되었다. 신상

- 
- 7) 가상자산 과세는 세법 개정안 발표 1년 뒤인 2021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022년 1월, 2023년 1월로 두 차례 연기되었으며, 지난 2022년 12월 여야가 2년 유예안에 합의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8) 서면법규과-920(2014. 8. 25., 삭제예판)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2021. 3. 2.)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10) 남현우,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사업소득 구분에 관한 연구—계속·반복성에 대한 해석론 및 가상자산소득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논총』 제7권 제2호, 한국조세법학회, 2022, 171~200면.
- 11) 가상자산 평가를 위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코인원)로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이·전홍민(2018)은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의 과세 가능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찰하였으며, 차동준(2021),<sup>12)</sup> 허종·윤태화(2020)<sup>13)</sup> 등은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종합소득 중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준복(2022)<sup>14)</sup>은 실질 과세의 원칙 관점에서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제도 및 발전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김동환(2021),<sup>15)</sup> 이소현·박정우(2023)<sup>16)</sup> 등은 조세법률주의 및 입법론적 관점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검토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20년의 가상자산 세법 마련 이후 수행된 선행연구는 과세 및 입법 관점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하지만, 해외 금융 선진국의 가상자산 과세 제도와 비교하면,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국내 상황으로 인해 관련 연구들의 대안 제시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가상자산의 세분화된 유형이나 특수한 절차, 상황 등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세분화된 과세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가상자산의 고유한 특성에 부합하는 세부 과세 대상 범위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sup>17)</sup> 가상자산은 실질자산이나 법정

- 
- 12) 차동준, “가상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체계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제98호, 한국국제회계학회, 2021, 1~24면.
- 13) 허종·윤태화,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방안 연구”, 『상업교육연구』 제34권 제2호, 한국상업교육학회, 2020, 145~171면.
- 14) 이준복,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와 가상자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법적 연구 : 실질과세의 원칙 관점에서”, 『조세논총』 제7권 제1호, 한국조세법학회, 2022, 87~116면.
- 15) 김동환, “조세법률주의 입장에서 살펴본 가상자산 과세 문제”, 『주간 금융브리프』 제30권 제25호, 한국금융연구원, 2021, 11~13면.
- 16) 이소현·박정우,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입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349~390면.
- 17) 유양숙, “가상자산의 유형별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10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33~80면.

화폐와는 달리, 그 생산과 증식 과정에서 고유한 프로세스와 매카니즘을 지니는데,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로 인해 창출되는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효과적으로 정립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본 연구는 현행 국내 가상자산 과세 적용 범위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채굴(Mining), 스테이킹(Staking), 포크(Fork), 에어드랍(Airdrop) 등을 통한 가상화폐 취득 방식과 NFT(Non-Fungible Token) 판매에 따른 소득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과세 대상 적용 범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 간에 가상자산의 개념 및 법적 성격 규정, 가상자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 원칙 정립 등의 문제들을 고찰하고 국내외 사례를 비교한 연구들은 다수 배출되었지만, 가상자산만의 고유한 생산·증식 프로세스와 소득 창출 매카니즘에 집중하여, 위의 절차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집중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채굴, 스테이킹, 포크, 에어드랍 등은 실물자산이 아닌, 가상자산이기에 발생하는 매우 특별한 프로세스이고, 이로 인해 창출되는 소득 역시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수한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생경한 소득 창출 및 급격한 투자 수익, 손실 등의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러한 미증유의 상황을 법제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와 법적 과세 방안을 정립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에 따른 소득세 과세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요 금융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가상화폐<sup>18)</sup> 취득 및 NFT 판매와 관련된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발전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가상자산

18) 본 연구에서 가상자산은 가상통화, 디지털 통화, 가상화폐, 전자화폐,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에 대한 적법한 과세 적용 범위 설정을 통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

### 1. 가상자산 취득

가상자산은 보안, 투명성 및 불변성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 운영되는 매체, 계정 단위 또는 가치 저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다.<sup>19), 20)</sup> 가상자산의 등장은 암호화폐의 시초가 된 2009년 비트코인(Bitcoin, 이하 'BTC') 도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익명의 개인 또는 그룹이 Satoshi Nakamoto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만든 비트코인은 암호화 원칙에 기반한 분산형 디지털 통화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그 이후로 이더리움(Ethereum, 이하 'ETH'),<sup>21)</sup> 리플(Ripple), 라이트코인(Litecoin) 등 각각 고유한 기능과 사용 사례를 지닌 각종 가상자산이 생성되었다.

가상자산의 주요 특징 및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은 탈중앙화된 분산 네트워크상에서 은행과 같은 기존 시장 중개자의 필요성을 없애고 P2P(Peer-to-Peer)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암호화 알고리즘과 합의된 메커니즘을 통해 보안 및 투명성을 보장한다. 둘째, 가상자산은 전

19) 맹수석,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의 검토 —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82권, 한국법학회, 2021, 151~179면.

20) 신지혜, “가상자산의 특성과 법적 규율 —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위험성과 규율 방향을 중심으로”, 『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3호,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89~118면.

21) 이더리움은 2013년 말 Vitalik Buterin에 의해 처음 제안된 오픈소스 형태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분산 응용 프로그램 및 스마트계약을 생성 및 배포한다.

세계적으로 은행이 없는 인구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액세스 등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에 참여하고 금융 서비스에 액세스하며 은행 계좌 없이 국경 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은 이더리움 등과 같은 국제 시장 플랫폼에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ecentralized Application, 이하 'DApp') 및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통해 자율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자산은 ICO(Initial Coin Offering)나 STO(Security Token Offering)<sup>22)</sup> 등을 통한 기업의 대안적인 자금 조달로써 기능할 수 있고, 분산 특성과 제한된 공급 방식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이나 각국 정부의 권위적 통제에 저항할 수 있으며,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헤지(hedge)로써 기능하고자 하는 독립적 개인들과 기관들의 가치 저장소이자 투자 포트폴리오를 위한 잠재적 다각화 도구로 고려될 수 있다.

가상자산은 실물자산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다양하고도 혁신적인 방식으로 취득될 수 있으며, 이 자체가 가상자산의 본질이자 차별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적, 제도적 인식은 아직도 미비한 편이다. 가상자산 취득의 고유성, 차별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야말로 가상자산 과세 체계의 미비함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만의 고유하고도 특수한 취득 절차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 항목과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상자산 취득은 채굴, 스테이킹, 포크, 에어드랍 등을 대표적인 방식으로 꼽을 수 있다. 채굴은 가상화폐의 거래 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얻는 행위를 말한다. 가상화폐는 원칙적으로 중앙 발행기관 없이 거래내역을 기록한 원장을 분산 네트워크에 저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블록을 최초로 생성한

22) ICO와 STO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서 암호화폐 공간에서 자금을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ICO는 보편적으로 규제가 덜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반면에, STO는 관할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기존 증권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 ICO에 비해 더 안전하고 합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의 경우 10분에 한 번씩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는데, 이 블록의 이름을 16진수로 표시한 총 64자리의 해시(Hash)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지급한다. 채굴에 성공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4년마다 한 차례씩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거친다. 최초 채굴이 이루어진 2009년에는 50 비트코인을 지급하다가, 2013년부터 25 비트코인으로 줄어들었고, 2017년부터 12.5 비트코인으로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6.25개로 줄어들 예정이다. 비트코인은 최종적으로 2140년에 채굴을 중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스테이킹은 자산을 예치하고 보상받는 구조로써, 은행 적금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별성을 지닌다.<sup>23)</sup> 스테이킹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네트워크에 맡김으로써,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은행 적금 상품과는 달리, 스테이킹한 가상자산은 일정 기간 이동할 수 없으므로 보유자가 원하는 시점에 파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점은 향후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유로운 출금이 가능하도록 구현될 전망이다.<sup>24)</sup> 아울러, 스테이킹은 트랜잭션(Transaction) 검증 절차에 참여하는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지분 증명(Proof-of-Stake, PoS)<sup>25)</sup> 메커니즘을 채택한 코인이 많지 않아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스테이킹이 가능하였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가상자산이 네트워크 보안 유지와 지분 증명을 위해 스테이킹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많은 사용자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게 되었다. 스테이킹

23) 이정수,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금융규제 연구”, 『증권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22, 183~224면.

24) 정승영,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小考 — 디파이(DeFi) 서비스 관련 영향 등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23, 327~389면.

25) 지분 증명은 암호화폐를 보유한 지분율에 비례를 통해 의사 결정 권한을 주는 합의 알고리즘으로, 노드(node)가 보유한 자산의 기준으로 권한을 분배하여 합의 및 보상을 분배한다.

지원이 가능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이더리움 2.0, 테조스(Tezos), 아이콘(Icon), 알고랜드(Algorand), 코스모스(Cosmos) 등을 들 수 있다.

포크는 한 개의 가상화폐가 두 개로 분할되는 것으로써, 버그 및 보안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기능 추가 등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나 기본 규칙이 변경될 때마다 발생하며, 크게 하드포크(Hardfork)와 소프트포크(Softfork)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sup>26)</sup> 하드포크는 가상자산이 분할을 통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소프트포크는 기존 가상자산이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하드포크를 통해 새로운 가상자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 생긴 가상자산은 기존 코인과 1대 1 비율로 에어드랍될 수 있다.<sup>27)</sup> 대표적인 하드포크 사례로는 비트코인—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클래식—이더리움 등을 들 수 있다. 세무적 관점에서 보면, 소프트포크보다는 하드포크 이후 새로 발생한 코인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에어드랍은 공중에서 떨어뜨린다는 의미로써, 새로운 가상자산 발행 시 첫 이벤트나 홍보를 위해 기존 가상자산 보유자들에게 보유 비율이나 기간에 따라 새로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에어드랍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특정 시점에서 자격을 획득한(스냅 샷 기준 시점) 이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신규 가상자산 등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써, 주식의 무상증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에어드랍은 마케팅을 통해 많은 가상자산 보유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운영된다.

26) 최정희,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65~98면.

27) 김현오 외 3인, “기술진보와 암호화폐시장 : 비트코인 하드포크 사례 연구”,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대한산업공학회, 2019, 3026~3045면.

## 2. NFT 판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 토큰(token)을 의미한다. 그림·영상 등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토큰 안에 담음으로써,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된다.<sup>28)</sup> NFT는 게임 내에서는 캐릭터나 게임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메타버스 내에서도 주요 아이템으로 활용되며, 예술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NFT는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자산에 대한 진본성, 원본성, 유일성 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 전달 수단으로써 유용하며, 소유자의 개인 정보, 거래 이력 등 중요 데이터들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한 관계로 거래 내력의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sup>29)</sup>

NFT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NFT 판매 관련 과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NFT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관계로, 모든 종류의 NFT에 대해 세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NFT 관련 과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NFT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NFT는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자산 권리 를 기준으로, 실물 자산 관련 권리와 연결되는 NFT, 디지털 아트 및 그에 관련된 권리와 연결되는 NFT로 분류되기도 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1년 12월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대체 불가능 토큰(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는 NFT를 5가지 유형인 게임형 NFT, 결제 수단형 NFT, 증권형 NFT, 실물형 NFT, NFT 아트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게임형 NFT와 결제 수단형 NFT, 증권형 NFT의

28) 장세형, 『NFT 실체와 가치 : NFT와 블록체인이 이끌어갈 메타버스 시대의 경제 생태계』, 위키북스, 2022, 15면.

29) 정완, “NFT의 이용증가와 입법 필요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57권 제3호, 경희법학연구소, 2022, 129면.

경우 「특정 금융거래 정보유형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으로 약칭함)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물형 NFT와 NFT 아트는 결제 수단이나 투자 대상으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sup>30)</sup> 이 보고서의 NFT 분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NFT 분류의 합리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준 점에서 의의가 있고, 다른 대안도 마땅치 않으므로, 본 연구도 위의 기준을 중요하게 참고하고자 한다.

한편, 디지털 자산을 NFT로 민팅(minting)<sup>31)</sup>하기 전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NFT를 분류할 수도 있다. 게임형 NFT는 민팅하기 전에 게임 아이템인 경우가 많고, 결제 수단형 NFT는 민팅하기 전에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상자산인 경우가 많다. NFT 아트는 민팅하기 전에 예술 작품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실물형 NFT는 민팅 전에 디지털 자산이 아닌 실물로써 존재한다. 다만, 증권형 NFT는 민팅하기 전에 모두 투자 계약 증권인 것은 아니고, 민팅을 함으로써 투자 계약 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주제인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에 따른 소득세 과세 방안이라는 취지에 맞게, 과세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NFT를 분류하는 방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특금법의 ‘가상자산’에 해당하여 동법이 적용되는 NFT, 둘째,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약칭함)상 ‘증권’의 개념에 해당하여 특금법과 자본시장법이 둘 다 적용되는 NFT, 셋째, 특금법과 자본시장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NFT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되는 NFT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판매 수익에 따른 과세/비과세 규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0) 한국금융연구원,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연구용역 보고서) 2021. 12., 12면.

31) 민팅(minting)에서의 ‘mint’는 화폐를 주조한다는 의미로써, 디지털 자산을 NFT로 만드는 개념이다.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일련번호를 각인하여 민팅하는 과정을 거치면 탈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나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기록된다. 민팅된 NFT는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정완, 앞의 논문, 2022).

소비자 또는 기업들은 NFT를 판매하고 이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에 NFT 게임 중 최초의 P2E(Play to Earn) 게임인 액시 인피니티(Axie Infinity)<sup>32)</sup>가 출시되었는데, 게임 이용자는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AXS(Axie Infinity), SLP(Smooth Love Potion) 토큰과 액시 NFT 등을 마켓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획득하였다. 아울러, 출시된 NFT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를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세계 최대 글로벌 NFT 마켓 플레이스인 오픈씨(OpenSea)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sup>33)</sup> 더 세븐즈(The Sevens) 민팅(Minting)에 성공한 이용자들이 관련 NFT 상품을 플리핑(Flipping)<sup>34)</sup>하여 얻은 이익은 총 2,050만 달러(약 241억185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NFT의 막대한 상품 성과 수익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의 한 유형인 NFT의 판매로 인해 획득되는 소득에 대한 합법적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그를 위해 아직 미비한 국내 과세 기준과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3. 국내의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 관련 과세 현황

국내 소득세법은 개인의 납세 의무 및 과세 소득 범위를 종류별, 항목별로 열거하는 소득세법 열거주의에 기초하고 있다.<sup>35)</sup>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 소득 범주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금법상 규정된 가상자산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sup>36)</sup> 그러나

32) 포켓몬에서 영감을 받은 디지털세계이다. 플레이어들은 액시를 모으고, 기르며, 베틀에도 참가하며 토큰[AXS(Axie Infinity) 및 SLP(Smooth Love Potion)]을 얻을 수 있는 경제에 참여 할 수 있다.

33)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의 ‘2021 NFT 시장 보고서’.

34) 플리핑은 다른 누군가가 구입했던 기존 NFT 제품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35) 오윤, “소득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 『조세법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16, 72면.

36) 홍준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법제도 분석 및 규제 개선방안 연구—특

가상자산의 정의에 상응한 열거주의 원칙의 소득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의 가상자산 과세는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미비하거나 불확실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국내 소득세법 열거주의식 원칙에 부응하여 다른 유형의 자산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가상자산 및 NFT의 시장 현황이나 실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방식과 범위를 정하여 합리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에 관련된 국내 소득세 과세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금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하여,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sup>37)</sup> 특금법의 규정을 차용한 관계로 가상자산의 개념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어음 등의 양도 및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가상자산 소득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즉, 가상자산의 개념 규정과 가상자산 소득 간에 법적 해석과 적용상의 괴리가 발견되는 것이다. 예컨대, 증권형 토큰은 증권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따라서 증권형 토큰 취득은 가상자산 취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하지만, BTC 마켓, ETH 마켓 등 기축 가상자산 마켓에서 특정 가상자산을 다른 유형의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는 가상자산 소득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증권형 토큰 취득과 다른 유형의 가상자산의 취득 간에도 과세의 불평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국내에서 가상자산 및 NFT는 해외에 비해 활발하게 거래되지 않는 관계로, 아직 가상자산 취득 절차로써 엄연히 수익이 발생하는 채굴,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및 그 취득에 대한 과세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편이다. 이처럼 가상자산 취득의 세부 절차와 유형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법적 규정·해석이 부족한 관계로, 가상자산 취득에 대한 균등하고 합리적인 과세

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중심으로”, 『법률 실무연구』 제10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55~75면.

37)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기준이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가상자산의 작업 증명(Proof-Of-Work, 이하 ‘POW’)<sup>38)</sup> 절차인 채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필요가 있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사업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현재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채굴로 인한 가상자산 취득은 엄연히 수익성을 지닌 활동이므로 장차 과세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분 증명(Proof of Stake, 이하 ‘POS’) 절차인 스테이킹과 하드포크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가상자산 취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해당 규정들도 역시 허점이 많은 편이다. 스테이킹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드포크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가상자산과 에어드랍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태이다.<sup>39)</sup>

이상과 같이 가상자산의 각종 취득·변경 절차 및 각각의 절차마다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규정이 미비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내의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왜곡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의 전체 규모와 흐름에 대한 추적도 어렵게 될 것이다. 가상자산은 국내에만 국한된 시장이 아니라, 국제 시장과 연동된다는 점에서도 국내 시장 왜곡은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소득세법상의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과세 없는 소득이 대량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각종 취득 절차마다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도 누락 없이 일관되게 과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NFT 판매는 특금법의 가상자산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엄밀하게 말해 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의 NFT 관련 유권 해석<sup>40)</sup>을 살펴보면, 이 문제 역시 재론의 여지가

38) 작업 증명은 P2P 네트워크에서 일정 시간 또는 비용을 들여 수행된 컴퓨터 연산 작업을 신뢰하기 위해 참여자 간에 간단히 검증하는 방식이거나 블록체인에서 정보를 랜덤한 논스(nonce) 값과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설정된 크기의 해시보다 작은 값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작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39) 김갑래, 앞의 보고서, 2022.

있다. NFT를 최초로 발행한 개인 소유주가 이를 플랫폼 회사에 민팅하거나 배포하면 해당 NFT를 다수가 공동 소유하게 된다. 플랫폼이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그 중 일부 수수료를 최초 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를 기타 소득으로 보아 원천 징수해야 한다고 최근 해석되었다. 이는 최초 발행자에게 발생한 수익을 기타 소득 대상으로 판단한 것일 뿐 NFT 판매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세세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나 판단 기준을 현행 소득세법에서 찾을 수는 없고, 모든 문제되는 상황을 일일이 유권 해석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창작품의 규정을 NFT에도 적용하여 명확한 세부 기준을 정하지 못한다면, NFT 민팅과 판매로 인해 엄연히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는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물 자산과는 구별되는 가상자산만의 특수한 취득 절차 및 NFT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열거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명확하고도 일관되게 과세/비과세 항목을 분류하고 명시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실물 자산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가상자산만의 독특한 취득 방식과 절차, 가상자산 중에서도 또 다른 특수한 의미를 지닌 NFT 판매와 관련된 과세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상자산 취득과 NFT 판매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과세 기준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과세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III.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 과세

본 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채굴, 스테이킹, 포크,<sup>41)</sup> 에어드랍 등의 가상화폐 취득 및 NFT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와 원칙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미국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 징수 목적을 위한 자산으로 취급하며, 포괄주의(Negative System)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별도의 과세 근거 없이도 과세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42)</sup> 다만, 과세 대상 가상화폐는 현금 교환이 가능하거나 동일한 가치를 지닌 가상자산(Convertible Virtual Currency)으로 한정한다.<sup>43)</sup> 즉,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법정화폐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기준으로하여 자본이득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며, 법정화폐로의 전환이 가능한 가상화폐만을 보통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sup>44)</sup> 이에 따라, 법정화폐로 전환될 수 없는 유틸리티 형 토큰/utility token 또는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등은 자본이득과세 대상

41) 소프트포크에 대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에서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별도로 기술하지 않는다.

42) 미국 국세청(IRS)은 2014년 4월 14일에 가상자산(virtual currency)을 이용한 거래에 대한 소득세 안내 지침인 국세청 가상자산 지침'(IRS, “Virtual Currency Guidance”, Notice 2014-21)을 공개하였다[[https://www.irs.gov/irb/2014-16\\_IRB#NOT-2014-21](https://www.irs.gov/irb/2014-16_IRB#NOT-2014-21)(검색일 : 2023. 6. 15.)].

43) IRS 가상자산 지침 제3조.

44) 임재범,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NARS 현안분석』 제24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7면.

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sup>45)</sup> 이처럼 미국 IRS는 모든 가상화폐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가 가능한 가상화폐만을 평가하여 과세하는데, 실제 수익성, 환금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과세는 참고할 만하다.

법정화폐로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의 구매, 판매, 교환 등은 모두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어 자본이득세가 적용되며, 이 때 세율 수준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결손이 있는 경우 이월된다. 단기 자본 이득은 종합소득 세율(최대 37%)로 과세하는 반면, 장기 자본이득은 장기 자본이득 세율(최대 20%)로 과세한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sup>46)</sup> 우선, 개인이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원시 취득한 경우 취득시점의 가상화폐 공정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를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보아 10~37%의 세율로 종합 과세한다(임재범, 2022). 가상화폐를 채굴 영업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 과세하고, 가상화폐 채굴을 통해 얻은 이익이 400달러 이상이면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로 분류하여 사회보장세 12.4%와 의료보장세(Medical care tax) 2.9%를 과세한다(IRS, 2022).<sup>47)</sup> 한편, 하드포크(hardfork)<sup>48)</sup> 또는 에어드랍(airdrop)을 통해 가상화폐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시점의 가상화폐 공정시장 가치를 경상소득으로 보아 종합 과세한다(IRS, 2023).<sup>49)</sup> 가상자산을 임금의 형태로 취득한 경우 지급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 공정시장 가치를 원천징수되는 과세 대상으로 파악한다.<sup>50)</sup> 미국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자산(property)으로 취급하므로, 근로

45) 신상화 외 2인, “암호화폐 과세제도 및 과세인프라 연구”, 『세법연구』 제18권 제7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34~35면.

46) 이은주, “가상자산의 역외적용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63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239~269면.

47) IRS, “IRS Virtual Currency Guidance”, Notice 2014-21 ; IRS, “Self-Employment Tax(Social Security and Medicate Taxes)”, 2022.

48) IRS는 하드포크를 통한 새로운 가상자산을 취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49) IRS, “Revenue Ruling”, Notice 2019-24.

자가 임금으로 가상화폐를 수령하는 것을 서비스 대가로 자산을 취득할 때에 적용되는 과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sup>51)</sup>

한편, IRS는 NFT 판매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지만, 열거주의 적용으로 인해 과세 범위는 제한적이다. 2023년 4월 IRS는 2023-27 공지를 통해 NFT를 우표, 실물 예술품, 고급 와인 등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수집 품과 똑같이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디지털 아트가 수집 품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새로운 범주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현재 수집 가능한 물품에 대해 명시한 IRC 섹션 408은 예술품, 양탄자·골동품, 금속·보석, 우표·동전, 주류 등 다섯 개의 자산 범주만 수집품으로 분류한다. 이 밖에도 IRS는 실체를 지닌 모든 개인 재산에 대해 수집 가능 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IRS는 NFT가 실물 상품과 연관된 경우 룩스루(Look-through) 분석을 통해 수집품으로 취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미국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전환 가능한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해서만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성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 과세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조세 형평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과세 제도인 동시에, 국내의 가상자산 대상 과세 제도 수립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할 만하다.

## 2. 일 본

일본에서는 2014년 이전까지 가상자산의 법률적인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았고, 이를 규제할 법률도 부재하였지만, 2014년에 마운트고스(Mt. Gox)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 등의 사유로 인해 파산함에 따라, 12만 7천여명

50) IRS,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51) Boris Bittker and Eutice, *Federal Taxation of Employee Compensation*, Warren Gorham & Lamont, 2022, pp.56~57.

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긴급하게 대두되었다.<sup>52)</sup> 2015년 6월 G7 정상회담에서 가상통화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국제적으로 공통 인식하면서 가상통화 법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계기로, 2016년 5월 25일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영업 행위를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금결제법 개정안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17년 4월 1일부터 일본판 가상통화법을 본격 시행하였다(천창민·배승욱, 2018).<sup>53)</sup> 이처럼 가상자산 충격 완화 및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계기로 가상자산 과세가 법제화된 만큼, 소비자의 합법적 이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과세 원칙이 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가상자산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가상화폐 거래 및 투자 등도 과세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다. 즉, 가상화폐 거래·투자로 인한 이익은 잡소득(Miscellaneous Income)<sup>54)</sup>으로 간주하여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부터는 가상자산 보유자가 일정 조건에 의해 자산 양도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양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최대 50만 엔(약 49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영리 목적을 위한 지속적인 암호화폐 거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55%(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sup>55)</sup>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 자체로

52) 오성근, “가상통화 인정법제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가상통화법제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8, 238면.

53) 천창민·배승욱,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현황과 시사점』(이슈보고서 18-03), 자본시장연구원, 2018, 38면.

54) 일본의 잡소득은 급여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 토지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등 9종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55) 길용원, “일본에서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상 취급 및 법제도 정비과정의 시사점”, 『조세와 법』 제16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재정연구소, 2023, 53~93면.

도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과세하며, 판매도 이익이 발생하면 동일하게 과세한다.

일본은 2023년 가상자산 과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거쳐 소득세 법상 채굴,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을 통해 취득된 가상자산에 대해 각각 합당한 과세 범위를 규정하였다.<sup>56)</sup> 우선, 채굴 및 하드포크에 대한 과세는 사업성 여부 및 소득 범주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즉, 채굴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되, 사업성이 없는 경우 잡소득에 해당하며, 하드포크를 통한 새로운 가상자산 취득은 시장 가격이 있다면 과세되지만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테이킹의 경우,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 소득은 잡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어드랍 역시 하드포크로 발생한 새로운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시장가치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시장가치에 의해 소비자에게 실제 수익이 발생하였느냐 여부를 공통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NFT 판매는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연말 소득 금액을 일괄 산출하여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 외부 자산과 교환되지 않는 등 게임 내부에서만 사용된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역시 시장가치에 따른 소비자의 실제 수익 발생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주식 등 금융상품의 양도로 인해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5~45%의 세율을 기준으로 종합 과세하므로 일부 가상자산 소득을 일반 금융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김용민, 2022). 실제로 지자체 정부가 지역민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10%까지 추가되면 최대 5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상자산 관련 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며, 이로 인해 세금 신고 누락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과세 당국에 미 신고된 가상자산 수익이 총 10억 엔(1,084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확인

56) 鈴木賢治, 日本の仮想通貨課税制度改正, 稅務研究, 2023, 16~17頁.

되었다.<sup>57)</sup> 일본은 가상자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손익을 자본이득과 통산할 수 없고, 가상자산 결손금의 이월공제 역시 허용하지 않는데, 이런 점에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 및 양도소득 대비 높은 세율로 과세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업계나 이해 관계자들의 비판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일본 과세 당국은 양도소득 해당성이 검토되고 있다. 부분적인 운영 과정상 문제점은 있지만, 일본 당국도 가상자산과 다른 실물자산, 금융자산 소득 간의 조세 형평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과세 합리성,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영 국

영국은 가상자산이 당초 지급결제용으로 고안되었지만, 현재에는 상당 부분 투자목적으로 사용된다고 간주하며, 이런 관점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법정화폐에 비해 환전 등이 느리고 비싸다는 점<sup>58)</sup>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으로 과세한다(박선종, 2021). 영국 국세청(HMRC)의 암호자산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국은 암호자산을 증권과 유사한 자산으로 분류하고, 개인이 암호자산을 양도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과세한다(OECD, 2020).<sup>59)</sup>

이런 원칙에 따라, 영국은 가상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유형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규정한다. 즉,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자본이득에 해당한

57) 김용민, “가상자산, NFT, 디파이 등 과세의 바람직한모습”, 한국세무사회 제18회 한국세무포럼, 2022, 31면.

58) 박선종, “증권형 가상자산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51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155면.

59) 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2020, p.23.

다고 판단되면 10%, 20%, 40%, 4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 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에서 연간 £12,300의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12,300 초과된 발생액이 있어야 과세한다. 이에 반해, 가상자산 소득이 소득세에 해당하면 차등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영국 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부터 별도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 받은 가치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때에는 해당 자산을 받은 이유가 기준이 된다. 보상의 한 형태로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만, 대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은 선물로 가상자산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소득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채굴 및 스테이킹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다.<sup>60)</sup> 채굴의 경우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스테이킹은 보상 성격에 따라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하드포크 및 에어드랍을 통해 발생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유상성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결정된다. 즉, 사업성 및 유상성이 있는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HMRC는 NFT 판매에 대해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영국은 우리나라와도 같이 가상자산의 법적인 성격을 무형 자산으로 파악하면서도, 과세 목적에 따라서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효과나 소득 실질성을 고려하여 일반 금융상품과 유사하게 취급한다(김용민, 2022). 즉, 가상자산 거래의 실질적 성격이 주식, 증권, 기타 금융상품들의 거래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금융상품 관련 거래에 관한 과세 관련 지침을 적용하여 자본이득으로 과세한다. 이처럼 영국 과세당국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간주하여 일반 금융상품과는 다르게 분류함에도 불구하고,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경제적 효과나 소득 실질성에 부합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과 접근 방식을 고수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영국 정부의 이와 같은 과세 방식은 조세

60)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cryptoassets>(검색일 : 2023. 6. 15.).

의 기본 원리·원칙 중 하나인 실질 과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써, 결과적으로는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 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 시행시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 4. 독 일

독일의 연방 중앙 세무서(Bundeszentralamt für Steuern, BZSt)는 가상자산에  
대해 KYC(Know your Customer) 프로세스, EU 지침 DAC8<sup>61)</sup> 및 암호화자산시  
장 규제(Markets in Crypto-Assets, 이하 ‘MiCA’)<sup>62)</sup> 등에 기초하여 과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범위 및 수준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다  
르게 적용된다. 즉, 1년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1년 이내에 처  
분 및 판매 시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어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  
만, 1년 이상 보유 후 가상자산을 판매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일 당국은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결제 수단은 아니지만 기타 경제적 재  
화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따라서, 독일은 채굴 및 스테이킹을 통한 가상자산  
취득에 따른 수익도 소득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한다.<sup>63)</sup> 다만, 채굴의 경우 면  
제 한도 기준인 §22 Nummer 3 EStG(독일의 소득세법)<sup>64)</sup>에 따라, 면제 한도  
금액 초과 시에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스테이킹도 마찬가지로 면제 한도  
기준을 초과하느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하드포크를 통

61) DAC8은 유럽 회원국 간 행정협력지침(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이하 ‘DAC’)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가상화폐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과세당국의 가상화폐 과세 근거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62) MiCA는 유럽 회원국의 가상자산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암호화 자  
산시장 규제로, 2023년 4월에 관련 법안이 최종 채택되었다.

63) §22 – Einkommensteuergesetz (EStG).

64) [https://www.buzer.de/22\\_EStG.htm](https://www.buzer.de/22_EStG.htm)(검색일 : 2023. 6. 15.)

한 가상자산 취득은 시장가치 등에 따라 과세할 수 있지만, 에어드랍의 경우 과세 대상 거래로 정의하면서도 가상자산 유입 자체에 대해서는 유상성 유무 등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NFT 판매와 관련하여 독일 내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NFT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 규칙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sup>65)</sup> 아울러, NFT를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면제된다.

이와 같이,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 표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독일의 방식은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원칙 하에 독일은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 금융상품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자본자산소득(Einkünfte aus Kapitalvermögen)으로 간주하여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2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방식으로 분리 과세한다(박웅신, 2020).<sup>66)</sup> 독일은 가상자산을 일반금융상품으로 분류하면서도,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금융상품의 양도, 이자, 배당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본이득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점에서도 기타 국가들과는 구분된다. 다만, 독일의 소득세법에 따라서 납세자는 종합소득 세율이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sup>67)</sup> 이와 같은 보완적 제도를 통해서 기타 소득인 가상자산 소득과 자본이득 간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보완적 조치는 과세의 형평성, 합목적성 등을 부분적으로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개선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65) BMF Schreiben vom 10. 5. 2022.에서 NFT는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규제되지 않다. 다만, §23 Abs. 1 Satz. 1 Nr. 2 EStG(독일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거래에 대한 과세 할수 있는 것이다.

66) 박웅신, “독일의 가상자산 및 ICO의 감독에 관한 법적 규제”, 『지급결제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지급결제학회, 2020, 31면.

67) 독일 「소득세법(Einkommen steruergesetz)」 제20조, 제32d조 제6항, 제2조 제5b항.

## 5. 호 주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은 가상자산에 대해 합법적 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하며, 투자 및 사업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각각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판매 및 교환 등 처분 시 발생하는 이득 또는 손실에 대해 세금 신고서에 보고하도록 하며 결손의 이월을 허용한다.

호주에서는 가상자산 취득과 NFT 판매에 대한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과세하며, 투자나 사업성이 없는 개인 용도로 소비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채굴 및 스테이킹을 통한 가상자산 취득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sup>68)</sup> 채굴로 인한 소득은 사업적 목적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구분되는데, 사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채굴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사업 목적 외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원래 토큰을 보유하면서 추가 토큰 형태의 보상을 받게 된다. 스테이킹의 경우 가상자산 취득 시점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하드포크 및 에어드랍을 통해 취득된 새로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한적 과세 대상으로 간주한다. 하드포크로 인해 취득된 새로운 가상자산에 대해 사업성 및 투자성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지만, 개인 용도로 소비되는 자산은 비과세된다. 에어드랍을 통한 가상자산 취득 시에는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매각 시 자본이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이 때 에어드랍 자산의 취득가액은 \$0이다. 또한, ‘초기 할당 에어드랍(Initial Allocation Airdrops)<sup>69)</sup> 조건에 충

68)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vestments-and-assets/crypto-asset-investments/>  
(검색일 : 2023. 6. 15.).

69) 암호화 프로젝트는 토큰의 첫 번째 배포인 토큰의 초기 에어드랍을 만들 수 있다. 이 토큰은 에어드랍 전에 프로젝트 토큰에 거래가 없었던 경우 초기 할당이다  
<https://www.ato.gov.au/individuals/investments-and-assets/crypto-asset-investments/>

족하지 않는 에어드랍은 수령 시 시장가치로 소득을 환산하여 과세한다.

호주 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범주에 NFT도 포함하여 취급한다. NFT 판매에 대한 과세는 가상자산 과세와 유사하게 개인 용도로 소비되는 자산 외에는 사업소득이나 자본이득으로 과세한다.

## IV.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 관련 국내 과세 발전 방안 논의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고찰 내용을 참고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과세 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가상자산 및 NFT 관련 규정은 소득세 법상 특금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이런 규정하에서는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상황과 유형의 수익에 대한 세분화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드러난다. 따라서, 주요 국가의 사례에서 확인하였듯이 발생한 수익의 특성, 관련 상황, 범위, 규모, 보유 기간 등에 부합하는 정확한 맞춤형 과세 규정이 필요하며, 특히 가상자산의 채굴, 스테이킹, 포크, 에어드랍 및 NFT 판매에 따른 과세에서 해외 국가의 규정을 참고한 발전 및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1. 가상자산 취득 과세 방안 모색

국내의 열거주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가상자산의 채굴,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은 직접 연관된 규정이 없다면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transactions---acquiring-and-disposing-of-crypto-assets/staking-rewards-and-airdrops/  
(검색일 : 2023. 6. 15.)].

들 항목에 대해 현재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굴은 복잡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써 새로운 가상자산을 획득하는 행위나 절차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블록을 생성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채굴로 인한 가상자산 획득은 사업적 수익과 개인적 이익의 특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사업성 여부를 불문하고 수익 발생 결과에 따라 공통적으로 과세를 하는데, 이는 과세의 형평성, 실질성, 합목적성 등에 모두 부합하는 조치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채굴에 대한 실제 수익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한 후 세부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과세 기준 및 방안으로의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스테이킹은 자산을 예치하고 보상받는 구조를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네트워크에 맡김으로써 추가 수익을 기대하는 성격이다. 이로 인해 해외 주요국에서는 채굴과 마찬가지로 사업성 여부를 불문하고 스테이킹으로 인한 실질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결국 스테이킹은 성격상 국내 이자나 배당과 유사하므로 과세를 위한 근거가 필요하며, 예치 수익 소득 성격을 띠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과세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상자산이 분할을 통해 가치가 바뀌는 성격을 지닌 하드포크에 대해 해외 주요국에서는 새로운 가상자산 취득을 추가적인 수익으로 간주하면서 그 수익의 실질성에 입각하여 세분화된 과세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하드포크로 인해 새로운 가상자산을 취득하였지만 그에 따른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가상자산의 시가가 애매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과세하거나 새롭게 취득하게 된 가상자산의 시가로 과세한다. 이러한 조세 실질성, 합목적성 원칙을 국내에도 참고하거나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에어드랍은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특정 시점에 자격을 지닌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새로운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런 점에서 하드포크와 비슷한 성격이다. 해외 주요국도 이런 속성을 중시하여, 실질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자본이득세 명목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과 유사한 형태의 취득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하드포크와 에어드랍의 경우, 해외 주요국에서는 무상의 가상자산 취득 관점보다는 양도 시 실질 수익이 발생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과세를 하는데, 이는 과세의 실질성, 형평성, 합목적성 등에 부합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국내에도 적용하거나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2. NFT 판매 과세 방안 모색

NFT는 희소성 디지털 토큰으로, 가상자산과 달리 복제 불가, 소유권 인정, 희소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NFT 판매에 따른 과세는 2021년 언론 보도에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결제·투자 수단이면 가상자산으로 분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기준 마련해야’한다고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NFT 시장에서 관련 과세 체계 마련에 대한 대응 및 준비가 미흡하여 NFT 소유주에게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NFT의 특성상 창작품 등의 성격을 나타내며, 각 주요국에서 NFT의 거래를 수익성 문제 때문에 과세하고 있다. NFT 판매에 따른 소득세 적용 범위를 일부분 또는 특정 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적용이 아닌, 국내에서도 영국과 같이 NFT를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으로 간주하거나, 독일과 같이 NFT의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 판매의 경우와 같이 동일 규칙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NFT의 거래는 미국처럼 수집품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미술품의 기타소득의 범주에 명시하고 국내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에서 NFT 거래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V. 결 론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적 변동성이 급증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써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자산의 취득, 양도, 대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손익을 합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의 이익에 대해서는 20%의 단일 세율을 일괄 적용하여 분리 과세하는 내용의 개정된 소득세법을 공포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과세개정 취지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다른 유형의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형평성을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입법안에 의한 가상자산 세제가 진정으로 과세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현시점에서 가상자산이 지급이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사례에서 투자 수단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결국 주식과 유사한 자본 이득의 역할이나 성격이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유형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조세 형평성, 합목적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합리한 조세제도는 시장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전체 소득세 체계를 혼란하게 만들어 조세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 단순성, 실질성, 합목적성 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국내 가상자산 관련 과세 제도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위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가상자산의 법적인 성격 규정 및 가상자산 관련 과세제도를 종합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가상자산 관련 과세 제도의 개선·향상 및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가상자산관련소득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과세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을 결여한 과세제도라고 볼 수 있다.

첫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자본이득으로써의 성격을 지니므로, 금융투자소득과 경제적 실질성이 유사하다. 그러나 가상자산관련소득을 금융투자관련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즉,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소득을 다르게 취급하는 점에서 과세의 형평성 원칙에 위반한다. 둘째, 금융투자관련소득은 금융투자상품 간의 손익의 통산과 손실의 이월공제 등이 가능한데, 가상자산관련거래 손실은 다른 자본이득과의 통산 및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 이 역시 동일한 성격의 소득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가상자산을 투자관련수단으로 선택한 개인 납세자가 과중한 조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 원칙에 위반한다. 셋째, 현행 가상자산의 과세는 자본관련이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가상자산관련소득과 금융투자관련소득을 달리 과세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사회적인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과세의 효율성도 저해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또한 원금 손실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고 투자 관련 수단으로써 거래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성이 유사한 가상자산과 금융관련상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세목이 적용됨으로써, 과세 제도가 더욱 어렵고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과세의 단순성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국내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국들의 가상자산관련 과제제도를 종합 비교 고찰하였는데, 고찰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상자산 소득을 자본이득세로 분류하고 과세의 실질성, 형평성, 단순성,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고찰 내용과 각 사례로부터 도출된 시사점 등을 토대로, 가상자산의 획득과 판매에 관련된 세부 영역에 맞는 특성화·세분화된 과세 제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작업은 가상자산 관련 과세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도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채굴,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을 통해 취득된 가상자산

및 판매된 NFT를 대상으로 국내 가상자산 소득세 적용 범위에 관한 실태 및 현황을 입법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국내 소득세법의 과세 대상 소득은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되며, 가상자산 채굴,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의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첫째, 소득세 법상 특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둘째, 게임머니,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어음 등의 양도 및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셋째, 그 외 소득 항목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거나 과세 적용 항목이 정확하게 열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국내의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명확한 규정 및 소득 발생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일관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 주요국의 과세제도 중 소득 발생 항목에 대한 파악과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런 작업을 본 연구에서 수행하였다. 고찰 대상 국가들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의 현행 과세 규정은 응능 부담 원칙 및 과세의 실질성, 형평성, 합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소득 발생 항목별 세분화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상황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국내 과세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위해서도 효과적으로 참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국은 법정화폐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실제 수익성, 환금성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이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보유 기간에 따른 차등 세율을 적용(10~37%)한다. NFT 판매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 포함하긴 하지만, 열거주의 적용으로 인해 과세 범위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동시에, 다른 자산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도 중시함으로써, 과세의 실질성, 형평성을 염수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시장 가치에 의해 소비자에게 실제 수익이 발생하였느냐 여부를 과세 판단 기준으로 삼는데, 이 역시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을 준수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자본이득과세와 다른 고율의 과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일본 당국은 각계의 의견조율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데이트

해 가고 있다. 영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며, 소득 상황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한다. 이로써, 경제적 효과나 실질성에 부합되도록 과세하는 원칙을 준수하며, 그 결과 조세의 기본 원칙인 실질 과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있다. 독일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 표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써,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역시 바람직하다. 호주 역시 금전적 가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투자성·사업성이 없는 개인 용도의 가상자산 소비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준수함으로써, 금전적 효과나 소득 실질성에 부합하는 실질적, 형평적, 합목적적 과세를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가상자산 취득 및 NFT 판매 관련 국제 과세제도의 주요 흐름에 부합하는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과세의 실질성, 형평성, 합목적성 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적 정합성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기준 하에, 각 항목별 과제체계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 채굴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의 규모, 소득 발생 경로, 소득의 성격 등을 명확하게 조사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나 매뉴얼을 정확하게 구축한 후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과세 규정을 적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상자산의 스테이킹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이자 및 배당 소득과 유사하므로, 수익성 실현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과세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하드포크 및 에어드랍의 무상성에 대한 이익을 소득으로 볼 것인지, 자본이득과세로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NFT 창작품 판매 소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통해, 과세 성격 규정 및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개인의 소득 범주에서 납세 의무자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상자산 과세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불확실성을 낮춤으로써, 투자 기업과 개인들에게 투자의 안정성, 확실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가상자산 취득의 세부 유형 중 채굴,

스테이킹, 하드포크, 어에드랍 및 NFT 판매에 대한 과세 범위 규정과 세부 기준들에 대한 현행 문제점 개선 및 향후 발전 방안을 해외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이 향후 국내의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종합적 발전은 물론, 특수 영역에 대한 세분화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이론적 지침이자 기초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參 考 文 獻

### 1. 국내 문헌

- 강다혜,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성 및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 길용원, “일본에서의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상 취급 및 법제도 정비과정의 시사점”, 『조세와 법』 제16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조세재정연구소, 2023.
- 김갑래,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이슈보고서 22-23), 자본시장연구원, 2022.
- 김동환, “조세법률주의 입장에서 살펴본 가상자산 과세 문제”, 『주간 금융브리프』 제30권 제25호, 한국금융연구원, 2021.
- 김용민, “가상자산, NFT, 디파이 등 과세의 바람직한모습”, 한국세무사회 제18회 한국세무포럼, 2022.
- 김재득 · 김찬선, “디지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SWOT 분석”, 『한국융합과학회지』 제11권 제9호, 한국융합과학회, 2022.
- 김현오 · 이어진 · 이대용 · 안광원, “기술진보와암호화폐시장 : 비트코인하드포크사례연구”,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대한산업공학회, 2019.
- 남현우,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사업소득 구분에 관한 연구—계속 · 반복성에 대한 해석론 및 가상자산소득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논총』 제7권 제2호, 한국조세법학회, 2022.
- 맹수석,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의 검토 —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82권, 한국법학회, 2021.
- 박선종, “증권형 가상자산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51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박웅신, “독일의 암호자산 및 ICO의 감독에 관한 법적 규제”, 『지급결제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지급결제학회, 2020.
- 신상이 · 전홍민,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과세가능성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9권 제5호, 한국세무학회, 2018.

- 신상화 · 홍성희 · 정 훈, “암호화폐 과세제도 및 과세인프라 연구”, 『세법연구』 제18권 제7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신지혜, “가상자산의 특성과 법적 규율—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위험성과 규율 방향을 중심으로”, 『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3호,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
- 염명배, “4차산업혁명 시대,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 (임금) 노동의 소멸, 여가혁명,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경제연구』 제36권 제4호, 한국재정학회, 2018.
- 오성근, “가상통화 인정법제에 관한 연구—일본의 가상통화법제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8.
- 오 윤, “소득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 『조세법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세법학회, 2016.
- 유양욱, “가상자산의 유형별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10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 이소현 · 박정우,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입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 이은주, “가상자산의 역외적용—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63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 이정수,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금융규제 연구”, 『증권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22.
- 이준복,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와 가상자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법적 연구 : 실질과세의 원칙 관점에서”, 『조세논총』 제7권 제1호, 한국조세법학회, 2022.
- 임재범,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NARS 현안분석』 제24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 장세형, 『NFT 실체와 가치 : NFT와 블로체인이 이끌어갈 메타버스 시대의 경제생태계』, 위키북스, 2022.
- 정승영,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小考 — 디파이(DeFi) 서비스 관련 영향 등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29권 제1호, 한국세법학회, 2023.
- 정 완, “NFT의 이용증가와 입법 필요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57권 제3호, 경희법학연구소, 2022.
- 조동관,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미국 · 유럽연합 · 인도의 입법례”, 『최신 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85권, 국회도서관, 2022.

- 차동준, “가상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체계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제98호, 한국 국제회계학회, 2021.
- 천창민·배승욱,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현황과 시사점』(이슈보고서 18-03), 자본시장연구원, 2018.
- 최정희,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한국금융연구원,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연구용역 보고서) 2021. 12.
- 허종·윤태화,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방안 연구”, 『상업교육연구』 제34권 제2호, 한국상업교육학회, 2020.
- 홍준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법제도 분석 및 규제 개선 방안 연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중심으로”, 『법률실무연구』 제10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 황인창,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향후 주요이슈”, 『CEO Brief』 제2022-6호, 보험 연구원, 2022.

## 2. 국외 문헌

- Boris Bittker and Eutice, *Federal Taxation of Employee Compensation*, Warren Gorham & Lamont, 2022.
- IRS, “IRS Virtual Currency Guidance”, Notice 2014-21, 2014..
- \_\_\_\_\_, “Revenue Ruling”, Notice 2019-24.
- \_\_\_\_\_,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2022.
- \_\_\_\_\_, “Self-Employment Tax(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2022.
- OECD, “Taxing Virtual Currencies : An Overview of Tax Treatments and Emerging Tax Policy Issues”, 2020.
- 鈴木賢治, 日本の仮想通貨課税制度改正, 稅務研究, 2023.

<Abstract>

**A Study on Income Taxation Plan for Virtual Asset Acquisition and NFT Sales**

Eun Mi Lee\* & Tae Hwa Yoon\*\*

As the scale of trading and investment in virtual assets is rapidly expanding and its influence on the global market is increasing,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taxation system for virtual assets in 2020 with the goal of stabilizing the financial market and protecting assets. However, the current domestic virtual asset taxation system is in early stages compared to financial advanced countries in overseas, and the subject and scope of application for virtual asset taxation are limited and unclear, and the system of detailed taxation resulting from the acquisition and sale of virtual assets has not been properly established. As a result, there are concerns about problems that violate tax fairness, practicality, and fit for purpose with other asset income, and do not comply with international tax law trends. With awareness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presented solutions to improve and develop the virtual asset taxation system by focusing on income tax arising from the acquisition of virtual assets and the sales of NFT scheduled to be implemented in 2025. In other words,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domestic taxation system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virtual assets and NFT sales, such as mining, staking, hardfork, and airdrop, and performed comparative analysis with major overseas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Australia and, and derived development solutions.

Among the methods of acquiring virtual assets, major countries clearly define taxable categories for income generation details through mining, staking, hardfork, and airdrop. According to Article 1 of the Domestic Income Tax Act, the principle of burden of performance is applied, and as long as enumeration is adopted, it is difficult to tax if there are no regulations on personal income.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n appropriate taxation system for income

---

\* First Author :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Gachon University

generated from mining, staking, hard fork, airdrop, etc., it is necessary to adopt provisions similar in nature to the Income Tax Act to enable comprehensive taxation, or to define taxation regulations in another higher-level law. If the corresponding tax regulations are properly implemented, it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management and tracking of domestic virtual assets, and will also be significant in terms of protecting taxpayers' rights. Meanwhile, NFT sales are rapidly increasing in relation to the fields of art, entertainment, and sports both at home and abroad. Despite the recent rapid expansion of the NFT market and profit generation, the tax regulations related to this field are unclear,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burden of performance under the Income Tax Act and is in urgent need of improvement.

Through reflection on the shortcomings of the domestic virtual asset and NFT-related taxation system and consideration of cases in major overseas countries, this study proposed a tax standard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plan based on suitability, practicality and equity that taxes actual income generated but also respects the principle of equity with other assets. Through this, I presented a development plan with international and institutional consistency that helps in rational management and investor protection of virtual assets, and also complying with the flow of international law related to virtual asset taxation.

► **Key Words** : virtual assets, income tax, staking, airdrop, mining, fork, NFT